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재혼한 부인 결혼전 동거인과 계속 관계 갖는데

〈문〉 저는 70세가 다 되어가며 본처가 세상을 뜬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에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요청대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아내의 이름을 조인트 테너트로 기록하여 공동 소유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45세인데, 결혼 후, 외출이 너무 잦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너무 늦고해서 제 큰아들이 뒷조사를 한 결과, 결혼 전부터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 남자 집을 계속 드나들며 관계를 지속한답니다. 제가 속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께서는 혼인 무효 소송을 신청하시고 집에 대한 공동 소유권 변경 무효화를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성립과 유지에 직결된 사실 혹은 요소에 대하여 은폐 혹은 위장하였을 경우,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법적 절차이며 이혼과는 법적 개념과 절차가 다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중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 결혼, 불인 사실의 은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혼전에 다른 애인 혹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은폐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혼전에 동거했던 애인과 지속적인 남녀 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지속하려했음은 결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므로 혼인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아내가 귀하의 재산 취득에만 본 목적이 있었고 혼전의 애인 관계를 결혼 이후에도 지속하며 귀하와 부부로서 동거동락할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주장하시고 아내가 결혼 이후에도 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기졌음을 재판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혼인 무효 판결과 더불어 혼인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변경의 무효 판결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문 이혼 했는데 결혼전 이름 되찾을수 있나

〈문〉 저는 3년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때는 저의 본 성씨를 되찾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본 성씨를 되찾고 싶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답〉 본인의 이름을 출생 신고 후에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혼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문에 포함

시키거나 시민권 신청 및 획득 시입니다. 귀하께서 시민권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가까운 장래에 신청 계획이 있으면 그 기회에 하시면 되고, 이미 시민권을 획득하셨으면 민사 법원을 통해서 성명 변경 신청 및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 이혼 후에 아이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은데

〈문〉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10세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곳에서 사업도 잘 되지 않고 해서 한국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갈까 하는데 아들도 반대하고 전처도 아들을 자주 볼 수 없게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받고 떠나야 하나요.

〈답〉 설사 귀하의 아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귀하는 법원의 명령 없이 아들과 한국으로 임의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혼 이후에 자녀를 데리고 타주 혹은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서는 Move Away Case라 칭하는데 설사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양쪽 부모를 모두 자주 만나며 접촉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이롭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첨부되어 고려됩니다. 첫째, 이주하는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 어느 정도로 미국과 비슷한 지의 여부, 외국에서 자녀가 겪어야 할 문화 적응의 어려움, 외국에서 자녀의 능력 발휘 및

교육, 취업등 장애성에 대한 보장 및 예측되는 장애 점, 지속적인 영어 사용과 영어 교육의 현실적인 가능성, 남녀 성차별 등의 다양한 문화 요소, 둘째, 물리적인 거리 차이로 인한 visitation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책, 국제적인 visitation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부담 능력, 발할 기간을 통한 구체적인 visitation schedule의 확정, 전하나 E-mail을 통한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의 여부, 셋째, 미국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의 이주하는 나라에서 효력 발생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장, 미국 법원의 자녀 양육권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관할권 행사 등이 고려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반대하고 엄마가 반대하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점과, 아이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학교에 다니며 교육 및 장애가 보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 엄마와 아이가 자주 만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한국으로의 이주할 때, 귀하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으로의 이주 계획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는 한 아이와의 한국 이주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